

중국의 유명상표보호에 관한 최신 사법해석

정보신청기관 :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

I. 서 언

최근 한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상표출원 및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표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 법규는 이미 상당정도 국내에 번역되고 소개되었다.¹⁾ 그러나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표법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사법해석을 수시로 발표하여, 이를 통해 부단이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의 재판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 이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에서 최근에 공포된 유명상표(馳

名商标)의 보호에 관한 최신 사법해석을 소개함으로써 유명상표 보호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 규정

- (1) 1982년 중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에서는 유명상표의 개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가입한 파리공약에 따르면, 중국은 공약의 참여국가로서 행정관리부문은 상표이익이 제기될 때, 공약의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를 보호한다.
- (2) 1993.7.에 수정된 “상표법실시세칙”(商标



1) 이미 번역된 중국 상표관련법으로 “상표법”, “상표실시조례”, “상표평심규칙”, “반부정당경쟁법”, “유명상표인정 및 보호 규정”, “단체상표·증명상표등록 및 관리방법”, “중국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특수표지관리조례”, “올림픽표지보호조례” 등이 있다. 또한 2009년 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국 상표분쟁지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 상표판례에 대한 기초연구들을 토대로 중국의 상표분쟁 예방 및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다(특허청·한국지적재산보호협회, “중국상표분쟁지도”, 2009년 용역보고서).

法实施细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는 상표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사기수단 또는 기타 부당수단을 통하여 등록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 제2항 복제·모방·번역 등 수단으로 이미 공중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 여기서 “타인에게 잘 알려진 상표”가 현재의 “유명상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 (3) 1996.8. 국가공상총국에서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驰名商标认定和管理暂行规定)을 공포한 적이 있고, 2003.4. 재차 “유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을 공포함으로써 앞의 임시규정이 폐지되었다.
- (4) 2001.10. 개정 후의 상표법 제13조는 이미 등록한 유명상표와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유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명확히 하였다.
- (5) 2001.7.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에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计算机网络域名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6조에서는 인민법원이 인터넷 도메인네임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등

록상표가 유명상표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2002.10.에 공포한 “상표민사분쟁사건에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이하 “상표분쟁해석”) 중 제22조에서는 법원이 상표분쟁사건의 심사 중에서도 당사자의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련된 등록상표가 유명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7) 2006.11.에 공포한 “유명상표 사법인정 등록제도(備案)에 관한 통지”(关于建立驰名商标司法认定备案制度的通知)에서는, 각 법원은 유명상표의 인정에 관한 판결은 최고인민법원 민사 제3법정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8) 2009년에 공포한 “최고인민법원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관철·실시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若干问题的意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명상표의 사법인정과 보호의 법률적 적용을 정확히 하여, 사실에 따라 인정하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인정하고, 피동적으로 인정하고, 수요에 따라 인정하는 등 사법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유명상표를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며, 유명상표의 비유사 영역에서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관련 사건에서의 재판감독과 업무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9) 2009.1. 최고인민법원은 “유명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관할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涉及驰名商标认定的民事纠纷案件管辖问题的通知)에서는 “본 통지가 전달된 날로부터 유명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은 각 성(省)·자치구(自治區) 인민법원 소재지의 시·계획단열시(市·計劃單列市)²⁾ 중급인민법원 및 직할시 관할구 내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이러한 유형의 민사분쟁사건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는 중급인민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유명상표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신 사법해석(사법해석 2009년 제3호)의 주요내용

1. 사법해석 제정의 배경



- 2) 계획단열시제도는 20세기 1980년대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일부 대형 도시를 省級 행정구역에서 따로 분리하여 이에 대하여 省級 대우를 부여하였다. 계획단열시는 직접 중앙의 영도를 받고, 재정제도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분리되며, 해당 계획단열시의 개정수입은 성급정부가 아니라 직접 중앙에 상납한다. 현재 계획단열시로 확정받은 도시들은 대련(요녕성), 청도(산둥성), 녕파(절강성), 하문(복건성), 심천(광둥성)이 있다.

2001.10.27.에 중국 상표법의 제2차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동 수정안은 국가 법률차원에서 최초로 유명상표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동 수정안에서는 유명상표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도하였음을 표명한다. 이와 같이 2001년부터 유명상표의 사법인정과 보호는 이미 7년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많은 실무적 경험을 누적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첫째, 유명상표가 소비자들의 인식 중에서 이미 상품의 명예칭호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유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가 일정한 인지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유명상표의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높은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적 도경을 통한 유명상표의 인정기관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라는 점으로부터 소비자들은 유명상표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행정적 절차를 거친 유명상표의 심사·이의·공고·허가 절차가 번거로운 데 비하여 사법절차를 거친 유명상표의 인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이었다. 유명상표의 보호는 사실상 “被動保護”와 “個案認定(개개의

사안별 인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被動保護”란 유명상표의 사용자가 타인이 자신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사법적 인정절차를 거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個案認定”이란 사안의 원고·피고에 대한 조정과 판결은 소외 제3자의 권리를 상대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무 중에서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분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써 사법절차를 통한 유명상표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안이 다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 공중의 유명상표에 대한 오해와 사법실무 중에서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명상표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해당 초안을 작성하고, 2008.11부터 한 달간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2009.5.1.에 정식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유명상표의 보호와 관련된 민사분쟁사건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涉及馳名商標保護的民事糾紛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法釋(2009)3號)을 공포하였다.³⁾ 본 사법해석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유명상표의 개념·적용범위·인정요소·입증책임·보호요구 등 다섯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사법해석의 주요내용



3) 이하에서는 “신 사법해석” 또는 “본 사법해석”이라고 한다.

1) 유명상표의 개념 및 인정기준

2003년 “유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정의는 “본 규정 중 유명상표라 함은 중국에서 관련 분야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사법해석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명상표란 중국 국내에서 해당분야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말한다. 즉, 신 사법해석은 유명상표의 정의에서 유명상표가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법해석 제5조에서 이러한 요건을 유명상표로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유명상표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한 것은, 현재 일부 사람들이 사법적인 도경을 통하여 유명상표로 인정받음으로써, 부당한 상업적 이득을 챙기려는 현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법원이 유명상표에 대한 인정은 다만 특정기간의 상표의 인지도에 대한 사실적 판단에 불과하며, 그 상표의 명예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리공약”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약”(이하 “TRIPs협약”) 등에서 사용한 “well-known trademark”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명상표의 지역범위와 알려진 정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뿐이고, “시장명성”을 유명상표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유명상표로 인정하는 사실요건의 하나로 하고 있다. 중국도 이와 같은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유명상표의 인정근거에 관하여 상표법에서는 유명상표 인정에 있어서 응당 고려해야 할 요소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상표법 제14조). 즉, ① 당해 상표가 관련 분야 공중에게 알려진 정도, ② 당해 상표가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기간, ③ 당해 상표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홍보활동의 시간·정도·지리적 범위, ④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 보호받았던 기록, ⑤ 당해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기타 요인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기는 하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그 중의 일부 요소에만 근거하여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직적으로 법률이 요구한 모든 요소를 전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한 일부 요소 사이에는 서로 중복된 내용도 존재한다. 예컨대 제1항이 규정한 “널리 알려진 정도(인지도), (知曉程度)”는, 다른 각 항이 규정한 지속적으로 사용한 시간·홍보상황·보호를 받은 기록 등 요소들로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 사법해석 제4조에서는 상표의 유명여부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명하다는 입증사실을 의거로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한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사건의 구체적 경우에 따라 그 조항의 전부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유명상표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저명상표(著名商標)란 일정한 지역 또는 지방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표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성급 공상 행정관리부문에서 인정하며,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법원은 사법인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유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에 관하여 신 사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사법해석 제5조 제1항).

- ①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시장 점유율, 판매구역, 이익과 세금액 등
- ②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시간
- ③ 해당 상표의 홍보 또는 이벤트 활동의 방식·지속기간·정도·자금투입과 지역범위
- ④ 해당 상표가 전에 유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 ⑤ 상표가 가지는 시장적 명성과 명예
- ⑥ 해당 상표가 이미 유명함을 입증하는 기타 사실

특히 중국의 상표등록절차가 복잡하고 등록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상표 등록 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고려할 요소에 포함시켰다(사법해석 제5조 제2항). 또한 사법인정의 특점에 결부하여 사법실천 중에서 늘 발생하는 상표의 유명정도를 반영하는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경직적으로 간단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일부 법원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 기간·성급 저명상표,⁴⁾ 업종별 순위 등을 유명상표 인정의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상표보호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표사용의 구체적 기간·성급 저명상표, 업종별 순위 등을 유명상표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상표의 유명함을 인정하는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필요요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사법해석 제5조 제3항).

2) 소송 중 유명상표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 중에서는 유명상표가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 경쟁행위의 요건사실일 경우에만 유명상표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당사자가 단순히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유명상표의 인정을 요구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법해석에서는 유명상표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민사분쟁사건 중에서 당사자가 유명상표를 사실적 근거로 들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경우에 따라 확실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된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한다(사법해석 제2조). ①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등록된 유명상표의 비유사 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 및 미등록 유명상표의 동일·유사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기업의 명칭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경쟁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③ 본 사법해석 제6조가 규정한 항변 또는 반소에 부합되는 경우이다. 즉, 원고가

피소 상표의 사용이 이미 등록된 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이미 존재하는 미등록 유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하였음을 이유로 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는 당해 미등록 상표가 유명상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사법해석 제6조).

또한 아래의 민사분쟁사건에 관해서 인민법원은 상표가 유명상표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사법해석 제3조 제1항). ①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 경쟁행위의 성립이 유명상표를 사실적 근거로 하지 않을 경우, ②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 경쟁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기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가 등록·사용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이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진행하여, 공중이 오인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원고가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사법해석 제3조 제2항).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원래 공포한 사법해석 초안 중에서는 “등록·사용한 도메인네임과 유명상표가 같거나 비슷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유명상표의 인정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나, 사법해석 중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일정한 인지도가 있고, 피고가 이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네임을 등록·사용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경우,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경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굳

이 유명상표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신청·등록이 비교적 용이하고, 유명상표를 인정하는 것을 도메인네임의 등록·사용에 대항하는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 당사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스스로 조작하여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신청하고 또 이런 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명상표의 인정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또한 “상표분쟁해석”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당해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분야 공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등록된 유명상표의 권리자는 해당 기관에 당해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상표권 침해에 관한 각종 민사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사법해석 제3조 제2항은 도메인네임 관련 상표분쟁에서 유명상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3)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

유명상표와 관련한 사건에서 상표권침해 또는 부당 경쟁행위 발생 전에, 인민법원 또는 국무원이 공상행정관리부문으로부터 유명상표로 인정받은 적이 있고, 피고도 해당상표가 유명상표라

는 사실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를 해당상표가 유명상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사법해석 제7조 제1항). 이는 상표의 유명여부가 상표등록인의 경영상황 및 시장경쟁상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명성 인정요소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새로이 심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분쟁해석” 제22조 제3항에서도 “당사자가 행정주관부문 또는 인민법원에서 유명상표로 인정한 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경우, 당사자가 당해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법해석은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명상표의 인정과정에서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해석 제7조 제2항에서는 본 사법해석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 인민법원은 상표가 유명상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자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그리고 사법해석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사회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 원고는 이미 해당 상표가 유명하다는 기본증거를 제공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의 해당상표가 유명상표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법해석 제8조). 이는 특별히 인지도가 높은 유명상표는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태이며, 이러한 상표에 관해서 당사자에 대하여 특별히 번거로운 입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유명상표의 보호범위 및 확정근거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함으로써, 공중을 오도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중국에서는 미등록상표와 등록상표를 구분하여,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동일·유사영역에서 보호하여,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영역에까지(跨类保护) 확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책임을 다르게 구분한 것은 파리협약 및 TRIPs협정 중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중국의 자국 상표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이종상품 및 서비스영역에서

의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수준을 TRIPs협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표준(minimum standard)에만 부합되도록 한 것이다.⁵⁾

상표법 제13조에서는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해서는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그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중을 오도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규정을 비교해 볼 때,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 사법해석 제9조의 제1항에서는 해당 분야 공중이 유명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피소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내원에 대하여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분야 공중이 유명상표 경영자와 피소상표의 경영자들 사이에 허가사용, 관련기업 등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서 언급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제9조의 제2항에서는 해당 분야의 공중이 피소상표와 유명상표 사이에 상당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유명성표의 특성이 떨어지고, 유명상표의 명성에 손해를 주거나 유



5) 유병덕,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제도”,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DataNews84-08.pdf>, 2012.3.8. 방문.

명상표의 명성을 부정당하게 이용할 경우, 상표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공중을 오도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분명치 못한 점이 존재하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전자는 “혼동”을 금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유명상표의 특성이 감소되고 “연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유명상표의 비유사 영역에서의 보호에 관해서는 두 가지 보호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절대적 보호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 보호방식이다. 절대적 보호방식은 유명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타 모든 유형의 상품에서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적 보호방식은 유명상표의 유명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보호범위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확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명상표가 비유사 영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중을 오도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중국 상표법상 유명상표가 비유사 영역에서의 보호는 상대적 보호방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비유사 영역에서 유명상표에 대하여 보호할지에 관해서는 신 사법해석 제10조에

서 다음과 같이 판단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① 유명상표의 현저한 정도, ② 유명상표가 피소상표 또는 기업명칭을 사용한 상품의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정도, ③ 유명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피소상표 또는 기업명칭을 사용한 상품 사이의 관련 정도, ④ 기타 관련 요소이다.

IV. 결 어

중국에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장 및 사법해석을 통하여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명상표의 보호제도가 잘 실시되려면 입법적인 조치 이외에도 사법인의 법조 윤리의 강화 및 국민들의 법률·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법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해당 입법동향을 계속 주목하고 상표의 등록출원을 통하여 보호를 강화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적 및 사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 화

(해외입법조사위원,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